① 공사안전보건대장 — 작성 대상 · 제출 기한 · 이행 확인 (저절로 판정)

※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발주자에게서 처음 도급받은 시공사(수급인)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쓰고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냅니다(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· 시행령 제55조 · 고시 제3조 · 제7조). 여기 적은 값은 대장 1쪽 ≪사업 개요≫에 저절로 들어갑니다.

㉮ 대상인가

총공사금액		

※ 총공사금액 =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마치려고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(고시 제2조) — 나눠 발주했어도 합칩니다.

시간 · 장소로 나뉜 공사를 일정 기간 ≪총액≫으로 계약했나요 (예: 연간 단가 · 유지보수)	
그러면 — 이 공사의 개별 공사금액	
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으로 나눠 발주했나요 (분리 발주)	
판 정	

㉯ 제출 기한 (고시 제7조 ②)

착공 예정일		준공 예정일	
제출 기한			

※ 대지 정리 ·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. 착공 뒤 설계 · 공법이 바뀌면 대장을 고쳐 다시 냅니다(제7조 ⑥).

㉰ 발주자 이행 확인 — 착공 뒤 3개월마다 1회 이상 (고시 제8조 ①)

회 차	이 날 전에 1회 이상 확인	비 고
1회		
2회		
3회		
4회		
5회		
6회		
7회		
8회		
9회		
10회		
11회		
12회		

※ 줄이 모자라면(3년 넘는 공사) 같은 차례로 3개월씩 이어 갑니다. 대장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발주자는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제8조 ②). 발주자는 제출받은 대장을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하고, 고칠 것이 있으면 보완 · 변경을 요청합니다 — [첨부 서식 1](제7조 ③ ~ ⑤).

[별지 제3호 서식]

공사안전보건대장

1. 사업 개요

공사명					
현장 주소					
공사금액			공사기간		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		□ 예 □ 아니오	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		□ 예 □ 아니오
발주자	회사명		전화번호		
	대표자		지정된 담당자		
	주 소				
설계자	회사명		전화번호		
	대표자		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		
	주 소				
시공자	회사명		전화번호		
	대표자		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		
	주 소				

공사개요	주요 구조물	구조	개소	최대 굴착 깊이(m)	최고높이 (m)	연면적 /길이
주요공법						

← 이 1행을 지우고 쓰셔도 됩니다

2.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

1) 거푸집 및 동바리

(1) 유해 ·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

분 야	유 형	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	시공자 이행계획
지반조사	지내력		
	지중물		
	경사도		
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	설계조건		
	편심하중		
	하부 기초		
기 타			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	. . .	(서명)

(2)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

설계도서	
구조검토 결과	

*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,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, 위치(시방서 쪽, 도면번호 등) 기재

2) 가설흙막이

(1)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

분 야	유 형	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	시공자 이행계획
지반조사	지내력		
	지중물		
	설계조건		
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	배수공법		
	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(작업공간)		
	계측기기 배치·관리		
기 타			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	. . .	(서명)

(2)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

설계도서	
구조검토 결과	

*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가설흙막이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,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, 위치(시방서 쪽, 도면번호 등) 기재

3) 비계

(1)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

분 야	유 형	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	시공자 이행계획
지반조사	지내력		
	지중물		
	경사도		
비계 설계	설계조건		
	건설물과의 이격거리		
	단 부		
	벽이음 대체		
기 타			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	. . .	(서명)

(2)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

설계도서	
구조검토 결과	

*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비계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,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, 위치(시방서 쪽, 도면번호 등) 기재

4)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

분 야	유 형	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	시공자 이행계획
공 종			
기 타			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	. . .	(서명)

3. 건설공사용 기계·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

1)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

2)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

3) 이동식크레인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

4) 항타·항발기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

4. 작성 및 확인자

1) 시공자(안전보건관리책임자)

일자	소속	직위	성명	서명

2) 확인자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)

일자	소속	직위	성명	서명

작성방법

〈 1. 사업 개요 〉

• 공사명 및 현장주소: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공사명 및 주소

•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: 설계 결과 추정되는 소요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

• 발주자 및 설계자: 발주자 및 설계자,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정보

• 공사개요: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구조, 개소, 최대 굴착깊이 등 주요 공사내용

• 주요공법: 건축(철근콘크리트공사, 철골공사 등), 토목(토공사 등) 등 각 공종에 적용되는 주요 공법명

〈 2.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〉

•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: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각 항목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기입하고, 이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사항 작성

• 착공 전 설계 및 시공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, 해당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발주자에게 제출

•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보완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, 해당 내용과 조치사항을 첨부 서식1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

•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: 착공 전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,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, 위치를 기재

•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·위험요인과 별도로 시공자가 새롭게 발견한 유해·위험요인

• 시공자 조치내용은 가시설 설계기준(KDS 21 00 00), 가설공사 표준시방서(KCS 21 00 00)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지양

〈 3. 건설공사용 기계·장비 배치 및 이동경로의 안전조치 〉

• 콘크리트 펌프카: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기하고,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(경사도, 지내력)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

• 이동식크레인: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, 붐대 회전반경 등 작업구역을 표기하고,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(경사도, 지내력)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

• 항타·항발기: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기하고,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(경사도, 지내력)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

• 타워크레인: 대지 평면도에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와 회전반경 등 작업구역을 표기
타워크레인 간 작업구간 중첩 여부 및 위험성 감소방안

[첨부 서식1]

□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

보완·변경 요청사항	
조치사항	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	. . .	(서명)
건설공사발주자 서명	. . .	(서명)

[첨부 서식2]

□ 건설현장 지도·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

구 분	점검일시:	. . .	지도·점검 주체:	
지적사항				
시공자 조치사항				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	. . .	(서명)

작성방법
• 지도·점검 주체: 발주자(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),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(기술지도), 고용노동부(점검·감독)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점검·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)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·점검을 실행한 주체
• 지적사항: 각 지도·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
• 조치사항: 각 지도·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

← 이 1행을 지우고 쓰셔도 됩니다

[첨부 서식3]

□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

업체명		담당 공종	
(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)			

작성방법
• 공종별 수급인의 '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' 첨부
•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'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' 참조)

제출 전 확인 · 다음 이행 확인

작성 대상	
제출 기한	
오늘 기준	
다음 이행 확인	

1. 제출 전 확인

번호	확 인 할 것	확 인
1	설계안전보건대장(발주자에게 받은 것)의 위험성 감소방안을 항목마다 옮김 — 2. 1) ~ 4)	
2	1. 사업 개요 — 공사개요 · 주요공법 · 발주자 · 설계자 · 시공자	
3	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면 심사 · 확인 결과의 조치 내용을 반영(시행규칙 제86조 ③ 2호)	
4	3. 기계 · 장비 배치 · 이동 경로 — 대지 평면도에 표시 · 지반조건 · 위험성 감소방안	
5	기술지도계약(법 제73조) 대상이면 계약 여부 · 지도 결과 · 조치 내용(시행규칙 제86조 ③ 4호)	
6	4. 작성 및 확인자 — 시공자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서명	
7	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(고시 제7조 ②)	
8	보완 · 변경 요청을 받으면 [첨부 서식 1] 로 조치 내용을 냄(고시 제7조 ⑤)	
확 인 요 약		

2. 착공 뒤 — 이럴 때 다시

1	착공 뒤 설계 · 공법이 바뀌면 대장을 고쳐 다시 냄(고시 제7조 ⑥)
2	발주자가 착공 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을 확인(고시 제8조 ①) — 위 ≪다음 이행 확인≫ 날짜
3	지도 · 점검(발주자 · 기술지도 · 고용노동부 · 공단)을 받으면 [첨부 서식 2] 에 지적사항 · 조치사항
4	대장대로 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발주자가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(고시 제8조 ②)

※ 이 장은 이 기기에 저장해 두고 다시 열면 ≪오늘 기준≫ 남은 날 · 다음 이행 확인 날이 다시 셈 됩니다. 적정성 확인자(발주자가 정함)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 · 건설안전기술사 · 건설안전기사(실무 3년) · 건설안전산업기사(실무 5년)입니다(시행령 제55조의2).